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의안 번호	2414
----------	------

제출년월일 : 2013. 8. 1.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노후·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4. 5. 17.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었으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일부개정(법률 제11293호, 2012. 2. 1. 공포, 2012. 8. 2. 시행)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도지사의 정비사업 관련 조례·개정 권한이 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함 (안 제3조)
- 나.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대상 및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규정함 (안 제4조)
- 다.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10조)
- 라. 법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해산을 위한 동의비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 마. 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조사, 정보 제공 동의비율 및 그에 따른 절차, 방법, 조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 바. 시행령 제47조 및 제52조, 제54조에 따른 분양신청, 관리처분의 기준 및 주택 공급기준 등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1조부터 제27조)
- 사. 법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하여 정함 (안 제28조부터 제41조)
- 아. 법 제77조의4 제1항에 따라 공공관리 대상사업, 지원방법, 절차, 적용범위,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정함 (안 제42조부터 제49조)
- 자. 법 제82조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관한 재원확보, 기금용도, 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0조부터 제64조)

제정 조례안 : 불임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관련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관련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조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관련조문
-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조문
- 『건축법』 관련조문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관련조문
- 『수도정비계획법』 관련조문
- 『안산시 건축조례』 관련조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조문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조문
- 『지방재정법』 관련조문
- 『지방세법』 관련조문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관련조문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관련조문
-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관련조문
-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조례』 전문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 2013. 2. 28. ~ 2013. 3. 20. (21일간)

기타 참고사항 : 불임

- 현행조례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조례(전문)]
- 방침 결정문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건축물(1989.1.24.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에 따른 기존무허가건축물 이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3.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4.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택공사 등(“주택공사등”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주택접도율”이란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연장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폭 6미터로 한다.
6.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세대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다. 기존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 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수에 따라 산정한다.
 - 마. 준공업지역 안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 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

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7. “무주택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세대주를 말한다.
8. “공공관리자”란 법 제77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시장을 말한다.
9. “위탁관리자”란 법 제77조의4제2항에 따라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10.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이와 유사한 시설
 - 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 다.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한 시설
 - 라.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①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산시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 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위해(危害)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1983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 나. 1984년부터 1992년까지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20 + [(준공년도 - 1983년) \times 2]$, 4층 이하의 건축물은 $20 + (\text{준공년도} - 1983\text{년})$
 - 다. 1993년 이후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은 40년, 4층 이하 건축물은 30년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40년
 - 나. 4층 이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은 30년
 - 다. 단독주택, 가옥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기존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한다)은 20년

- ③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④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을 말한다.
- ⑤ 제3조제2항에 따라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부과 개시일로 한다.

제2장 정비구역의 지정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 ①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3호가목(4)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말하는 “밀집”의 정도는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법률 제3719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 또는 위법시공 건축물과 노후·불량 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2.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말하는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 되어 있다는 것은 ‘호수밀도가 헥타르당 80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 하다는 것은 ‘도로, 주차장 또는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3.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마목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 하다는 것은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4.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바목에서 말하는 “과소필지 등이 과도하게 분포된 지역”이라는 것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 ③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요건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2호가목에서 말하는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4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말하는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호수밀도가 �ект아르당 70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나목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 하다는 것은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4.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2호나목의 “시·도 조례로 비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이란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대상구역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6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 ④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6호에 따라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수립대상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확장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정비계획 수립시 조사 내용) 영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소유자·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안의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주민 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기존 수목의 현황

제6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2조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서 도로 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구역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전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정비구역의 분할계획 또는 단순한 부지계획의 변경
7.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8.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제7조(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① 영 제13조의2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7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정비계획도서, 정비계획 설명서 및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28조에 따른다. 다만, 국·공유지는 동의자 수 및 동의 면적에서 제외한다.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 사업은 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
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 유무 및 노후·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한다)
6.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 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기간(법 제4조제1항제7호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사업 시행차별 사업시행인가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9조(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요청)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그 동의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17조를 따른다.

제10조(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 등)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비용의 산정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3.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1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회계감사결과
 4. 매도청구대상자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주택재건축사업에 한정한다)
-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안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관할구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
 4.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5.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첨부한다.
 6. 임원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로 주민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제6호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제12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7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 가입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13조(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①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 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2.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3분의 2
- ②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해산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4.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동의서
- ③ 조합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비사업조합 해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명부(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해산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조합 해산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해산 동의서
-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 등의 조치를 한다.

제14조(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 ②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의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를 요청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동의서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장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이미 제공한 구역
2.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이후에 조사를 신청한 구역
3. 시장이 구역의 여건상 조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요청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되 불가피한 경우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조합정관에 정한 사항) 영 제31조제1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 소집 · 사무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4.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6.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제16조(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8조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0조제8호에 따른 시행규정 중 조례 제12조제1호 ·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영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3. 영 제41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4. 영 제41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규약의 내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사업시행자 이외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없거나 총회의 의결로 규약을 변경하도록 정한 사항 중에서 조례 제12조제1호 ·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다. 토지등소유자
5. 법 제32조에 따라서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인가 · 허가 등으로서 해당 법률에 서 인가 · 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제17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 시행인가서의 정비사업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18조(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3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로서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3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란 임대 또는 전세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영 제41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3.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0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시행기간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보수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정비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조서 · 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 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유지 · 공유지의 조서
13.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14. 빗물처리계획
15.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6.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제20조(정비구역 분할 및 결합 시행)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 · 문화재 등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과 역세권 등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 간에 시행할 수 있다.
2. 구역을 분할하는 경우는 영 제12조제9호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하고,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21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47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 ②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 · 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22조(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의 산정) 법 제4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산정방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대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

1.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는 공동주택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따른다.
2. 제1호 이외의 공동주택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대지비·건축비 및 그 밖에 사업시행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산출근거에 따라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이 추천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3조(주택공급 기준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주택 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 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여,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의한다.
- ②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 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 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같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

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③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4.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08년 7월 25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산시 건축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제5호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48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라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 「건축법」 제정(1962. 1. 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24조(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방법 및 기준) 영 제52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한다. 이 경우 규모별 배정은 조합원 소유 종전 주택 등의 동별·위치·층수 등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2. 그 밖에 관리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등으로 정한다.

제25조(주택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5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에 따라서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안산시 건축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제26조(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
준으로 영 제11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
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
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
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
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자
 3. 해당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4.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
는 주택,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이 선정한 자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전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시장이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서 소득이 있는 자
- ③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제27조(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유지·공유지의 관리처분) ①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②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에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 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서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③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장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제28조(설치) 법 제77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안산시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9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은 법 제77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는 3명 이하로 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비사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3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뽑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간사 및 서기)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3.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5조(조정의 신청 및 회의) ① 회의는 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전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조정의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시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건축주, 설계자 및 시공자 등을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38조(회의록 등의 작성·관리)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 ③ 회의록은 녹음에 의한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비용부담)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에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의3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1. 제1항에 따른 감정·진단·시험·검사·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드는 비용

제40조(수당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비밀준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지원

제42조(공공관리 지원의 대상사업) ① 법 제77조의4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 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로서 시의 재정과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공공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라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으로 동의방법 및 절차는 법 제17조를 따른다.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제43조(공공관리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때까지 공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법 제77의4제4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일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77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77조의4제1항의 기관 중

에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위탁대상 기관 선정절차를 준용하여 기관을 지정하고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4조(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77조의4제2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그 밖에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제45조(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6조(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관리자 등의 기능 및 역할
 3.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제44조제2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47조(위탁관리자의 지정 등) ① 공공관리자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위탁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관리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위탁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위탁업무의 범위
5. 위탁기간
6.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7. 감독에 관한 사항
8.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8조(공공관리의 정보공개) 공공관리자 또는 위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법 제77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49조(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공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공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제50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5
 2.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30
 4. 법 제66조에 따른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공유지매각대금의 100분의 30
 5.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된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6.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7.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의 회수금 및 그 이자수입
 8.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 ③ 제1항에 따른 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 부과·징수책임자는 자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5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 및 영 제60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 부담금
3. 법 제36조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
4. 정비사업 관련 국·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5. 정비사업을 위한 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시에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7. 정비사업 공공관리에 필요한 경비
8.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시장이 정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2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안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고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외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4조(기금의 심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5조(기금의 보조·융자의 대상) ① 제51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보조 및 융자대상은 영 제58조에 의한 주요 정비기반시설로 한다.

- ② 보조의 대상은 주요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 공원을 조성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로 한다.
- ③ 융자의 대상은 주요 정비기반시설 중 보조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으로 한다.

제56조(기금의 보조·융자의 신청) ① 제51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보조 및 융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에게 인가 받은 조합이 착공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보조 및 융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서약서
2. 착공신고 필증 사본
3. 보조·융자 신청과 관련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조합정관 및 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약
5. 보조금 또는 융자금 사용계획서 및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업비 내역서(원가계산업체의 검토의견서가 첨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7조(융자조건)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 ②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5퍼센트로 한다.

제58조(보조 및 융자대상자 선정 및 취소통지) ① 시장은 제5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보조 및 융자신청을 받은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대상자를 선정한 후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 및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을 취소하고 즉시 지원금의 전액을 회수토록 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착공예정일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3. 융자금을 정비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제59조(기금의 보조 및 융자금액) ① 제51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보조 및 융자금액은 영 제6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범위 내로 하되, 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최고한도 기준을 설정하고 최종금액은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1. 정비구역당 보조금과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최고한도를 7억원으로 정한다.(단,

도시계획상 저밀도 개발시에는 12억원으로 한다)

2. 보조금 : 보조대상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조성공사비의 50퍼센트와 5억원 중 적은 금액(단, 도시계획상 저밀도 개발시에는 조성공사비의 50퍼센트와 10억 원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3. 융자금 : 융자대상 정비기반시설 조성공사비의 80퍼센트와 제1호에서 제2호를 뺀 금액 중 적은 금액

② 제1항의 본문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 다른 정비 구역들과 비교하여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및 융자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제60조(변경신고 등) ① 기금을 보조 및 융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실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

2. 상호 및 소재지 변경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자체에 따른 불이익은 기금을 보조 및 융자받은 자가 책임진다.

제61조(사업완료의 보고) 기금을 보조 및 융자받은 자는 법 제52조에 따른 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시 기금의 사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시행 완료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정비기금업무 담당국장

2. 기금지출원 : 정비기금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지출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제63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관련규정의 준수) ① 기금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65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 실적을 해당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9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신고수리) 인가
4.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변경·중지·폐지) 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5.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6. 법 제52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및 공사완료 공고

제66조(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54조에 따른 이전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유효기간) 제13조는 2014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유효기간) 제14조는 2014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조례」는 폐지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인가·허가·승인(심의 포함)등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종전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387호)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실·과		건축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건축과장 김경환
	담당·팀장 직위·성명	주거정비계장 이정희
	담당자 성명(전화)	한민석 (행정 2386)

<별지 제1호서식>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동의서

1. 동의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

2. 동의자 구분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 여부(□ 동의자, □ 부동의자)

3. 동의자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토지	소재지(공유여부)	면적(m ²)
		(계필지)	
		()	
		()	
건축물	소재지		동수
	()		
	()		
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 유목적)	설정토지		지상권의 내용

*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

소유권 위치	동 호,	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	m ²	등기상 대지지분(면적)	m ²

4. 동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지장 날인)

안산시장 귀하

첨부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 2012. 8. 1 이전에 동의서는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종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첨부
----	---

<별지 제3호서식>

() 정비사업조합 해산 신청서					처리기한 60일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주택재건축사업 <input type="checkbox"/> 주택재개발사업			
신청인	조합의 명칭	조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조합내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사업시행구역	위치		구역면적	(m ²)
		토지등 소유자수	()명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	()명 ()%
해산의향	설립인가일				
해산의향	① 토지등 소유자	(토지소유자 : (건축물소유자 : (지상권자 :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 명) 명) 명)	동의율	(동의자 수 /토지등소유자수) %	
	② 조합 설립에 동의 한 토지등소유 자	(토지소유자 : (건축물소유자 : (지상권자 :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 명) 명) 명) 명)	동의율	(동의자 수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수) %	
<p>「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 해산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안산시장 귀하</p>					
구비서류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60퍼센트 이상이 해산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조합 해산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산동의서				

() 정비사업조합 해산 동의서

1. 동의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

2. 동의자 구분 : 조합설립 인가시 동의 여부(□ 동의자, □ 부동의자)

3. 동의자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토지	소재지(공유여부)	면적(m ²)
		(계필지)	
		()	
		()	
건축물	소재지		동수
		()	
		()	
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 유목적)	설정토지		지상권의 내용

*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

소유권 위치	동호,	번지	아파트 동호
		상가	
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		m ²	등기상 대지지분(면적) m ²

4. 동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 정비사업조합 해산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지장 날인)

안산시장 귀하

첨부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 2012. 8. 1 이전에 동의서는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종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첨부
----	---

<별지 제5호 서식>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사업 시행 구역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위 치		구역면적	(m ²)	
	토지등소유자		()명	조사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 수 및 동의율	()명 ()%
	추진 단계	구 역 지정일			
추진위원회 승인일					
조 합 설립인가일					
사 업 시행인가일					
<p>「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를 요청합니다.</p>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에 관하여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1부 3.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조사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동의서

1. 소유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

2. 소유권 현황

※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인 경우

권리 내역	토지	소재지(공유여부)	면적(m ²)
		(계 필지)	
		()	
		()	
건축물	소재지	동수	
		()	
		()	
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 유 목적)	설정 토지	지상권의 내용	

※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

소유권 위치	동호,	번지	아파트
		상가	동호
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	m ²	등기상 대지지분(면적)	m ²

3. 동의내용 :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조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지장 날인)

안산시장 귀하

첨부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 2012. 8. 1 이전에 동의서는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종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첨부
----	---

<별지 제7호서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신청서

신청자	구 역 명 :	구역
	사업시행기간 :	
	주 소 :	
	조합명(사업시행자) :	
	대 표 자 :	전화번호
	건 물 용 도 :	
신청금액	총: (W)	보조금액: (W) 융자금액: (W)
취급은행	은행	지점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일부를 보조·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구비서류

1. 서약서 1부
2. 착공신고필증 사본 1부
3. 조합정관 또는 기타 규약 각 1부
4. 보조·융자 신청과 관련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보조·융자금의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업비 내역서(원가계산업체의 검토의견서 첨부) 1부
6. 기타 시장이 보조·융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위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안산시장 귀하

※ 제출된 서류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기금의 보조 및 융자신청사항 변경신고서

신 청 인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사업장소재지)	
변 경 사 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발생일자
신청인(법인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 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			
그 밖의 사항			
변경사유			

위와 같이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9조에 따라 기금보조 및 융자신청사항에 대한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한국어 | English

신 고 인 (인)

- ※ 첨부서류 1. 법인인감증명서 1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2.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3. 그 밖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 1부

안산시장귀하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374
----------	------

제안년월일 : 2013. 4. 23.
제 안 자 : 도시환경위원장

1. 수정 이유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타 위원회의 임기와 동일하게 조정함.
- 부정확하게 사용된 용어를 정비함.

2. 주요 골자

- 분쟁조정위원회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함.(안 제29조 제4항)
- 기금지출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함.(안 제62조 제1항 제2호, 안 제62조 제2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9조 제4항 중 “3년으로”를 “2년으로”로하고,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기금지출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조문 대비 표

원 안	수정안
<p>제29조(구성) ①~③ (생략)</p> <p>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⑤ 생략</p>	<p>제29조(구성) ①~③ (원안과 같음)</p> <p>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⑤ (원안과 같음)</p>
<p>제62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 (생략)</p> <p>1. (생략)</p> <p>2. <u>기금지출원</u> : 정비기금업무 담당 주사</p> <p>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지출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한다.</p>	<p>제62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 (원안과 같음)</p> <p>1. (원안과 같음)</p> <p>2. <u>기금출납원</u> : 정비기금업무 담당 주사</p> <p>② 기금운용관 및 <u>기금출납원</u>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한다.</p>